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4. 8. 10.
발 의 자 : 강두석 의원의외 12인

1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2004년도 건물 및 기타 건물 시가표준액으로 승인 시 달된 재산세 결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임에도 전년 대비 최고 3배 이상 인상되어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.
-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세율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, 과다하게 인상된 재산세를 25% 인하하여 주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공동주택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현행 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5% 경감함.
- 표준세율 개정내용
 - (1) 재산세 과세표준액 1,2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1,000분의 3”을 “1,000분의 2.25”로 인하
 - (2) 재산세 과세표준액 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3만 6천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”를
“2만 7천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.75”로 인하
 - (3) 재산세 과세표준액 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5만 6천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”을
“4만 2천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.5”로 인하
 - (4) 재산세 과세표준액 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11만 6천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”을
“8만 7천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2.5”로 인하
 - (5) 재산세 과세표준액 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의 경우
세율 “35만 6천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”을
“26만 7천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7.5”로 인하
 - (6) 재산세 과세표준액 4,000만원 초과인 경우
세율 “85만 6천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”을
“64만 2천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2.5”로 인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【지방세법 제188조(세율)제⑥항】 : 시장·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- 나. 예산조치 : 비 예산
- 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세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세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< 과 세 표 준 >	< 세 율 >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2.25
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	2만7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.75
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 이하	4만2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.5
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8만7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2.5
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	26만7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7.5
4,000만원 초과	64만2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2.5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 개정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 제21조의2(세율)

현		개 정 (안)	
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		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	
<과세표준>	<세 율>	<과세표준>	<세 율>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3	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2.25
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	3만6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1,200만원 초과 1,600만원 이하	2만7천원+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.75
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 이하	5만6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	1,600만원 초과 2,200만원 이하	4만2천원+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.5
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11만6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	2,200만원 초과 3,000만원 이하	8만7천원+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22.5
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	35만6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	3,000만원 초과 4,000만원 이하	26만7천원+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7.5
4,000만원 초과	85만6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	4,000만원 초과	64만2천원+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2.5
		부 칙	
	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 개정 규정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.</p>	